

# 이혼 합의서

성명 : 박성재 (주민등록번호 :)

성명 : 주미혜 (주민등록번호 :)

자녀 성명 : 박윤슬

박성재와 주미혜는 이혼, 위자료, 재산분할 및 위 자녀에 대한 친권, 양육권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- 다 음 -

**제1조 [이혼]** 박성재와 주미혜는 이혼한다.

**제2조 [양육권, 친권]** 박윤슬에 대한 친권, 양육권은 주미혜가 행사한다.

**제3조 [양육비]** 박성재는 박윤슬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2,000,000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.

- 1) 양육비는 박윤슬 명의의 계좌에 매월 25에 입금한다. (선지급 : 차월 양육비)
- 2) 박윤슬이 만 19세(2033년 11월)에 해당하는 양육비까지 지급한다.

**제4조 [면접교섭권]** 박성재는 박윤슬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 교섭할 수 있다.

- 1) 일시: ① 매월 2회 첫째, 셋째주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 
② 박윤슬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5박 6일  
③ 추석 및 설날이 포함된 공휴일 중 각 1박 2일
- 2) 방법: 박성재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박윤슬을 면접, 교섭한 다음 지정된 일시 무렵 다시 데려다 주는 방법
- 3) 협조의무:
  - ①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.
  - ②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, 변경할 수 있다. 다만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

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늦어도 2일 전까지 문자 등으로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.

③ 질병이나 박윤슬의 사정으로 면접교섭의 어려운 경우 박윤슬과 통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.

**제5조 [재산분할]** 재산분할은 현재 소유부동산과 부채는 하기와 같이 합의한다.

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578 중앙힐스테이트 1차아파트 107동 701호를 박성재가 소유하기로 한다.

② 박성재 명의의 부채 대구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우리은행, 새마을금고의 신용대출은 박성재가 모두 갚는다. 주미혜는 이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.

③ 주미혜가 박성재 어머니의 김순옥에 빌린 10,000,000은 박성재가 인수한다.

④ 추후 박성재 명의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혼인 기간동안(8년 10개월)의 50%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지급 시 이를 청구할 수 있다.

**제6조 [분쟁의 종결]** 박성재, 주미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, 이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등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.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, 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, 날인한 후 1부씩 소지하기로 한다.

2022. 02. 16.

박 성 재 (인)

주 미 혜 (인)